

2026년 제4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연구과 전문연구원 채용공고
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근무할 ‘전문연구원’을
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.

2026년 8월 1일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

1.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

□ 채용 개요

○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

부 서	구 분	인원	예정업무
임상연구과	전문연구원 나급 (육아휴직 대체)	1명	- 의약품 임상평가 기술 개발을 위한 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안 연구 -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한 RWD /RWE 활용 연구 - 국내외 임상시험 관련 자료 조사·분석 - 연구사업 성과 활용(사례집 정보집 자료집 발간 등) - 기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자료 작성 및 행정 업무 등
	전문연구원 다급	1명	

※ 담당 예정 업무는 대표적인 업무이며, 그 외에 「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상
임용된 부서에 분장된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.

□ 자격 요건

○ 분야별 및 등급별 자격요건

등급	자격요건	근무지역
연구원 나급 (대체)	○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 ○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.연구 실적이 있는 자 ○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.연구 실적이 있는 자 ○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·연구실적이 있는 자 ○ 10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·연구실적이 있는 자 [관련분야] ○ 의학, 약학, 수의학, 약물학, 약제학, 임상약학, 생명공학, 생화학, 의료정보학(데이터사이언스) 등 관련 분야 전공자 * 우대사항 - 의료빅데이터(건강보험심사평가원, 건강보험공단 자료 등) 활용 유경험자, SAS, R 프로그램 사용 경험자 우대	충북 오송 (평가원)
연구원 다급	○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○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.연구 실적이 있는 자 ○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·연구실적이 있는 자 ○ 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·연구실적이 있는 자 [관련분야] ○ 의학, 약학, 수의학, 약물학, 약제학, 임상약학, 생명공학, 생화학, 의료정보학(데이터사이언스) 등 관련 분야 전공자 * 우대사항 - 의료빅데이터(건강보험심사평가원, 건강보험공단 자료 등) 활용 유경험자, SAS, R 프로그램 사용 경험자 우대	

○ 공통사항
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*
-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남자의 경우,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
-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
* **결격사유(국가공무원법 제33조)**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○ **우대사항**

- 장애인, 저소득층 대상자, 국가유공자

- * 장애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장애인 응시자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(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)
- * 저소득층의 범위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·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

2. 보수 및 근무조건

□ 근무 조건 등

- 신 분: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제근로자
- 근무기관: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
(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)
 - * 「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」 제24조(전보)에 따라 향후 근무지 및 소속부서가 변동 될 수 있음
- 계약기간
 - 전문연구원 나급(휴직 대체): 채용계약일부터 ~ '26년 12월 31일까지
 - * 최대계약기간('26.12.31.)까지 근무 후 계약 종료
 - 전문연구원 다급: 채용계약일부터 ~ '26년 12월 31일까지
 - * 근무성적평가 등에 따른 재계약 가능(계속근로기간 2년 경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)
- 근무시간: 주 40시간
- 보수수준: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름
 - (26년도 전문연구원(나급) 1호봉 기준, 월 2,955,500원)
 - (26년도 전문연구원(다급) 1호봉 기준, 월 2,366,700원)
 - * 급식비(매월 16만원), 초과근무수당, 명절휴가비(6개월 이상 근무시) 별도 지급
 - **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 가입

3. 구비서류 및 전형일정

○ 제출서류

구분	내용
공통 서류 (필수제출)	-응시원서(시스템 입력) -자기소개서(시스템 입력) -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-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-주민등록초본(남녀 공통, 남자는 병역사항 기재된 것) -최종학력증명서(졸업증명서, 학위증명서 등) -성적증명서(대학 이상 최종학력까지)
선택 서류 (해당자 제출)	-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※ 국민연금가입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시 경력 인정 불가 -기타 면허(자격)증 사본 -어학성적서 -연구논문 및 장애인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(운전면허 제외)

○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

-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
- 학력, 경력, 자격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 서류에 본인 여부, 발행기관, 발급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음
 - * 학력증명서, 자격증 등은 원본확인 문서번호를 통해 진위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제출(문서확인기간이 지난 서류 제출시 해당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)
 - **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, 휴직기간, 담당업무(구체적으로 기재),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가 명시된 것으로 제출(경력이 불명확한 경우 미인정 될 수 있음)
- 파일 오류 및 비밀번호 설정으로 열람이 불가하여 심사가 어려운 것은 본인 책임으로 함

- 학력·자격 등은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은 공고 마감일까지 인정하여 심사

○ 면접심사 주의사항

- 별도로 안내한 입실시간까지 면접대기장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 지각으로 인한 불합격 처리

○ 채용일정

- 접수기간 : '26. 8. 1(토) ~ '26. 8. 7(금)
- 접수방법 :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(<http://employ.mfds.go.kr>)에 접속하여 접수(인터넷 접수만 가능)

※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: 응시 전형 및 부서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

- 시험방법 및 일정

시험방법	시험(예정)일자	시험장소	합격자 발표 / 장소
서류전형	'26. 8. 10(월) 예정	-	개별 통보
면접시험	'26. 8. 12(수) 예정	별도 통보	개별 통보
최종발표	'26. 8. 14(금) 예정	-	개별통보 및 채용 홈페이지 게시
근무시작일	9월 중 예정	-	변동 가능

4. 기타사항

-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, 근무기관(지역) 등이 본인과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, 제출된 서류는 아래 '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' 제11조에 따라 처리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- 합격 통보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, 채용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, 개인 사정으로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 별도의 채용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신원조회 · 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응시자는 해당 응시부서 및 지원등급,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, 제출서류 미비,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채용포기, 합격취소, 결격사유, 개인사정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(※ 문의 : 평가원 임상연구과 김용규 ☎043-719-5259)

5.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

- 기본증명서 1부
-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주민등록등본·초본 1부(남녀 공통 제출)
 - *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까지 기재된 것
- 최종학력증명서 1부
- 통장사본 1부
- 신원진술서(약식) 1부
- 반명함판 사진 2매, 흰색 바탕 사진 파일 제출
(JPG, 해상도 300이상, 354픽셀 * 472픽셀)
- 장애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저소득층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-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
[붙임 1]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(제17조제1항 관련)

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합니다.

☐ [필수] 기본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수집·이용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기간
성명, 국적, 주소, 생년월일, 연락처, 계좌은행, 계좌번호, 전자우편주소, 학력, 학위, 수상실적, 경력·재직사항, 가족사항, 차량번호	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, 급여지급,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·복무 기록관리, 청사출입관리	근로관계 종료 후 3년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☐ [필수] 민감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기간
국가유공자정보, 장애정보, 북한이탈주민정보	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, 법적사무처리	근로관계 종료 후 3년

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☐ [필수] 기본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수집·이용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기간
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전자우편주소	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	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※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20 년 월 일

성명: (서명 또는 인)

식품의약품안전처장(또는 소속기관의 장) 귀하

[붙임 2]

**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
체크리스트(확인서)**

(제24조제2항 관련)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1. <u>공직자</u>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*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	해당 ☐ 비해당 ☐
2. ‘<u>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</u>’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 *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*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: 비해당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: 해당	해당 ☐ 비해당 ☐
3-1. 해당 부패행위로 <u>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</u>된 사실이 있는지	해당 ☐ 비해당 ☐
3-2.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<u>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</u>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)	해당 ☐ 비해당 ☐
4-1. 해당 부패행위로 <u>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</u>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	해당 ☐ 비해당 ☐
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<u>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 내)</u>	해당 ☐ 비해당 ☐
4-3. 권익위법(‘16.3.29. 제14145호로) 시행(‘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	해당 ☐ 비해당 ☐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	해당 ☐
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	해당 ☐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20 년 월 일

생년월일 . . .

지 원 자

(서명)